

## 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

자동차 소유자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최초등록일								주행거리			km
	등록번호								용기개수			
장착 위치	용기에 대한 판정								밸브(안전장치)에 대한 판정			
	용기 번호	사용 연한	표시 사항	외관검사				누출 검사	밸브 번호	외관 검사	누출 검사	
손상				부식	외적 영향	변형						
그 밖의 장치에 대한 판정												
불합격사유												
검사유효기간								재검사기간				
종합판정												
검사자	책임검사원							검사원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인

**내압용기 불합격조치에 대한 안내**

1. 불합격판정 받은 용기는 시행규칙 제57조의15에 따라 파기하여야 합니다.
2. 내압용기를 교체한 후에는 시행규칙 제57조의13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